

2026년 만화출판 지원사업 공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재)제주콘텐츠진흥원에서 2026년 만화출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 4. 15.
재단법인 제주콘텐츠진흥원장

I 사업목적

- 우수 만화·웹툰 콘텐츠 단행본 출판 지원을 통한 창작IP 가치 극대화
- 제주 지역 기반의 우수 콘텐츠 유통 활성화 및 만화 산업의 선순환 구조 구축

II 사업개요

- 공고명: 2026 만화출판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6. 5. ~ 11.
- 지원대상
 1.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이며 국내외 미출판 창작 원고를 보유한 창작자(예비 창작자 포함)
 2. 공고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이며 국내외 미출판 창작 원고를 보유한 사업자
 - ※ 단,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출판업 명기 필수
 - ※ 저작권 보유 작가와 출판관련 계약 완료된 자
- 지원규모: 과제당 6,000,000원, 총 3건(총 18,000,000원)
- 지원내용: 우수 만화(그래픽노블 포함) 및 웹툰의 출판 지원

Ⅲ

사업 세부내역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이며 국내 미출판 창작 원고를 보유한 창작자(예비 창작자 포함)

【 지원 제외대상 】

- ✓ 신청과제와 동일한 산출물로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사업대행기관 등)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완료한 자
- ✓ 정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각종 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조치를 당한 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혹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중인 자)
- ✓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침해한 자
- ✓ 기존 매체를 통해 발표된 적이 있는 콘텐츠 또는 기획안을 재제작하는 자
- ✓ 과도한 폭력묘사·언어, 선정성 등 성인등급에 해당하는 창작물을 제작하는 자
- ✓ 진흥원 사업과 관련하여 협약 또는 계약을 위반하여 참여제한 조치 중인 자
- ✓ 공고일 기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 ✓ 기타 원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이며 국내 미출판 창작 원고를 보유한 사업자

※ 단,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출판업 명기 필수

※ 저작권 보유 작가와 출판관련 계약 완료된 자

【 지원 제외대상 】

- ✓ 신청과제와 동일한 산출물로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사업대행기관 등)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완료한 사업자
- ✓ 정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각종 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조치를 당한 사업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혹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중인 자)
-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사업자
- ✓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침해한 사업자
- ✓ 기존 매체를 통해 발표된 적이 있는 콘텐츠 또는 기획안을 재제작하는 사업자
- ✓ 과도한 폭력묘사·언어, 선정성 등 성인등급에 해당하는 창작물을 제작하는 사업자
- ✓ 진흥원 사업과 관련하여 협약 또는 계약을 위반하여 참여제한 조치 중인 사업자
- ✓ 공고일 기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사업자
- ✓ 기타 원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지원내용

구분	내용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 만화(그래픽노블 포함) 및 웹툰의 출판 지원
지원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한없음 (다만, 성인물, BL/GL, 범죄물, 폭력물 등 제외) * 제주 소재 활용 시 우대 가점 적용
지원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3개 과제
지원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당 6백만원(부가세 제외, 100% 출판비용 편성)
과제수행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체결일로부터 ~ 11.13.
과제 결과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 가능한 단행본으로 편집이 완성된 샘플도서 1종 이상(표지 포함) 10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를 목적으로 유통가능한 도서 500권 이상 출판 - 도서의 최소 분량은 만화원고 100쪽 이상(도서크기 128mm X 188mm 이상) - ISBN 발급 필수 및 유통계약서 ◦ 최종결과보고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작권 등록 증빙서류 - 사업비 지출 증빙서류 1부
지원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미출판 창작원고 보유작가 또는 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종료일(2026.11.13.)까지 단행본으로 출판이 가능한 원고 및 저작권을 보유한 작가 - 사업자의 경우 작가와 출판관련 계약이 완료된 자 ◦ 협약만료일까지 과제 결과물 및 결과보고서 제출 필수 ◦ 지원금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보험기간: 협약기간+60일) ◦ 출판 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콘텐츠진흥원 제작 지원 표기 필수 ◦ 선정제외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이전에 도서(전자책 포함)로 발간된 경우 - 공고일 이전에 ISBN을 발급받은 경우 - 기발행된 도서의 수정, 수정증보, 개정사항인 경우 - 저작권 침해 등 명백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협약체결 후라도 협약해제) - 기타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다고 진흥원이 판단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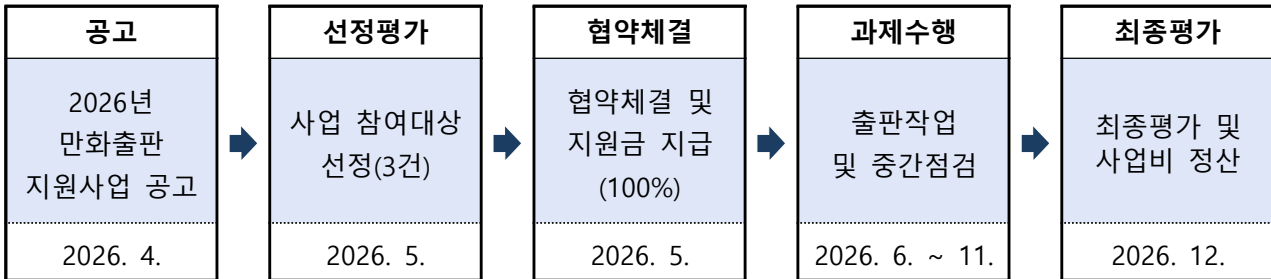
□ 유의사항

구분	내용
사업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이며 국내외 미 출판 창작 원고를 보유한 창작자(예비 창작자 포함) ◦ 공고일 기준 사업자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이며 국내외 미 출판 창작 원고를 보유한 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출판업 명기 필수 ※ 저작권 보유 작가와 출판관련 계약 완료된 자
서류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 과제로 진흥원 및 타기관 지원사업에 동시 지원할 수 없음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지원사업에 제출하는 과제는 신규 콘텐츠의 기획안에 한함 ◦ 접수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서류는 이메일 제출만 가능함(이메일 제출 후 수신여부 반드시 확인) ◦ 과제 신청을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서류미비는 따로 안내하지 않으며, 제출기한 까지 제출 자료의 수정 및 보완 가능 ◦ 필요시 신청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사업계획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지원 대상 콘텐츠가 타인의 저작권 또는 초상권, 대본(구성안)저작권 등을 침해하거나 분쟁이 있을 경우 모든 책임은 지원자 및 지원사업자에게 있음 ◦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신청자격이 상실되고, 진흥원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반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함 ◦ 신청자는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증빙하여야 하며 기타 불임자료 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해 책임짐 ◦ 제출서류 허위기재 및 증빙자료 미비시 지원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
권리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재산권 소유는 작가(또는 사업자)에게 귀속함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콘텐츠진흥원의 사업홍보 및 프로모션 또는 공익 목적의 비상업적 활용 권한을 인정함
과제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발급에 관한 비용 일체는 선정자 부담으로 함 ◦ 선정된 과제는 협약체결 후 지원금 100%를 지급하며 사용 사업비의 사후정산을 실시함(100% 출판비용 집행, 부가세 제외) ◦ 과제 수행 중 1회 중간점검(서면)를 통해 제작 진행상황을 진흥원에 보고하여야 함 ◦ 진흥원은 과제 추진상황 확인을 위하여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진흥원의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작품 규격에 현저히 미달된 과제는 작품 완성도와 상관없이 '실패' 판정함 ◦ '실패'로 평가받은 과제는 기지급된 지원금 모두 환수 조치할 수 있음 ◦ 협약 만료 이후에도 개발된 출판물 판매를 위한 홍보 프로모션 및 매체 투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함 ◦ 사업 종료 후에도 실적, 매출, 사업화 성과 등의 자료 제출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기타 과제 수행 중 주요사항 등에 대해서는 관리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함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내용 및 지원 사항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심사기준 미달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선정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등 결원이 발생할 경우 예비선정 순번에 따라 추가 선정할 수 있으며, 예비선정순번은 공개하지 않음 ◦ 신청자는 본 공고 내용 및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 및 준수하여야 하며, 신청자격요건 미충족, 허위기재, 증빙누락 등이 확인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귀속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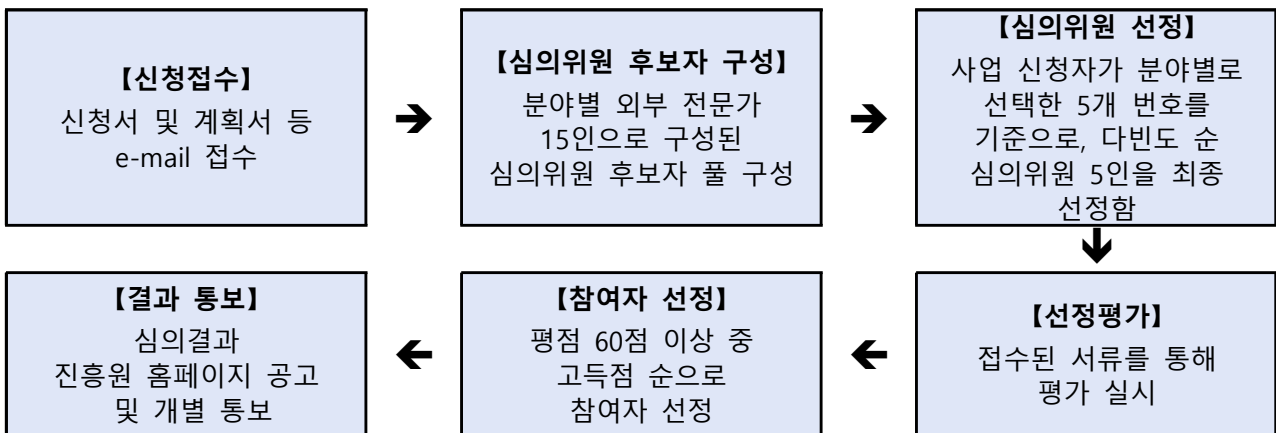
IV 추진일정 및 절차

□ 추진일정



※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선정절차



※ 심사기준 미달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평가지표

구분	평가항목	배점
작품성(30)	◦ 제작 원고의 우수성 ◦ 제작 원고의 차별성(소재, 줄거리 등)	30
기획성(40)	◦ 출판 기획 능력의 우수성 ◦ 출판 계획 일정의 적절성 ◦ 사업수행자의 제작 경험과 역량의 우수성	40
사업성(30)	◦ 출판물의 유통가능성 ◦ 출판물의 홍보·마케팅 계획	30
합 계		100
우대가점(5)	◦ 제주콘텐츠진흥원 입주기업 및 입주작가	2
	◦ 제주 지역소재 활용	3
	◦ ESG강의 이수자	1
총 합 계		105

V

신청방법

- 공고기간: 2026. 4. 15.(수) ~ 2026. 5. 7.(목)
- 접수기간: 2026. 4. 15.(수) ~ 2026. 5. 7.(목) 14:00까지
- 접수방법: 이메일 제출(wlsghks@ofjeju.kr)
 - 메일제목: 만화출판지원_○○○(성명)
 - 제출형식: 각 서류를 PDF로 변환하여 압축하여 제출(서명 또는 날인 필수)
 - 제출서식: 제주콘텐츠진흥원(<http://www.ofjeju.kr>) 홈페이지 - 알림마당(정보마당) - 공지사항
- 제출서류

연번	서류명	비고
1	사업 신청서	[서식1]
2	사업 수행계획서	[서식2]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3]
4	신청자격 자가진단서	[서식4]
5	우대가점 자가확인서	[서식5]
6	심의위원 추천표	[서식6]
7	출간용 원고	PDF 양식 제출
8	출판계약서, 출판저작권계약서 등 원작자가 있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	자유양식
9	주민등록초본	공고일 이후 발급본
10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공고일 이후 발급본
11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국세, 지방세 각 1부, 공고일 이후 발급본
12	(사업자) 4대보험 완납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본
참고사항	※ 주민등록초본 발급 시 유의사항 - 발급형태: 선택발급 - 표시할 정보: 현주소의 발생일 - 현주소의 발생일 이외 개인 정보 모두 미표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문의처

담당부서	E-Mail	전화번호
콘텐츠기반팀	✉ wlsghks@ofjeju.kr	☎ 064)766-0709

VI 기타사항

-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진흥원에서 정하는 관련 규정 및 규칙 등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신청기업은 이를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함
- 다음의 경우 지원금 환수(이자 포함),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제재대상사유	제재조치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선정된 경우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2년간 지원사업 참여제한
수행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협약 내용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2년간 지원사업 참여제한
지원과제의 중간평가 또는 결과평가 결과가 불합격인 경우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2년간 지원사업 참여제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사업수행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2년간 지원사업 참여제한
지원사업자의 사정으로 지원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2년간 지원사업 참여제한
지원금을 개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 환수
사업비 정산에 불응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잔액의 보고 및 반환을 지체하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 환수

※ 그 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함

2026년 4월 15일
(재)제주콘텐츠진흥원장